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윤혜령 편집

03

남북관계

총리급 합의

주요 위원회 구성

경제협력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철도, 도로, 해운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군사적 조치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 윤혜령 편집

03

남북관계

총리급 합의

주요 위원회 구성

경제협력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철도, 도로, 해운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군사적 조치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3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인 김연철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박주화, 윤혜령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 S B N 978-89-8479-923-3 94340
978-89-8479-920-2 (전4권)
가 격 13,500원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다. 평화정착이 비핵화의 속도를 재촉하고,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의 동력이다. 2018년 평창이 평화의 기회를 제공했고, 남북, 북미의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가 왔다. 물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산맥을 넘어야 할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의 기차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주요 합의, 남북관계의 분야별 주요합의, 그리고 북한의 과거 제안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참여자 모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 합의를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의 주요합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체제는 비핵화의 환경이고,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필요하다. 알고 보면 과거의 비핵화 협상도 포괄적 협상 형식이었다.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교환이었고, 여기서 안전보장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약속과 이행 사이의 간극을 주목해야 하지만,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적대국가 사이의 관계 개선 과정이나 ‘풀기 어려운 분쟁’의 평화협정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걸렸지만 약속을 이행해서 평화를 정착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분쟁의 성격이 다르지만, 합의문은 주고받은 타협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북관계나 해외사례에서 합의문은 문서가 작성되는 당시의 관계를 반영한다.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의제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의제는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합의이후 이행을 통해 합의문은 점점 더 구체화된다. 이 자료집이 합의문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를 향해 걷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료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통일연구원 원장

김연철

- I. 총리급 합의 1
 - 1. 7·4 남북공동성명 [1972.07.04.] 3
 -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 9
 - 3.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 총리회담 합의 [2007.11.16.] 20
- II. 주요 위원회 구성 29
 - 1.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05.07.] 31
 - 2.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05.07.] 34
 - 3.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09.17.] 37
 - 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03.18.] 40
 - 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12.] 43
- III. 경제협력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51
 -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1.01.30.] 53
 -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공동보도문 및 합의문(2차~13차)
[2001~2007] 56
 - 3.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공동보도문 및 합의서(2차~4차)
[2003~2013] 94
 - 4.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5.07.12.] 99

목 차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7.11.16.]	103
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7.12.06.] ..	106
7.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6.06.06.]	111
8.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2007.04.22.]	114
9.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2007.07.07.]	115
10.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 공동보도문 [2007.05.04.]	119
11.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5.07.31.] ..	121
12.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2005.08.19.]	124
13.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2007.12.18.] ..	126
14.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2007.11.05.]	128
15.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7.12.15.] ..	130
IV. 철도, 도로, 해운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133
1.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2차-12차) [2002-2006]	135
2.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2.12.06.] ..	162



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8.02.13.]	170
4.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04.13.]	171
5. 철도 분계역사 등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관한 합의서 [2005.04.18.]	181
6.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2007.05.13.]	183
7.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2007.11.21.]	188
8.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2007.11.21.]	218
9.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2007.12.01.]	221
1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8.01.30.]	225
11.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2004.05.28]	226
12.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1-4차) [2002-2004]	243
13.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7.12.28.]	252
V. 군사적 조치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253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 [2000.11.17.]	255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 [2002.09.12.]	256



목 차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2.09.17.]	257
4.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3.07.31.]	263
5.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2.23.]	269
6.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2004.06.04.]	272
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7.11.16.]	275
8.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7.12.29.]	278
9. 동·서해지구 남북열차 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2007.05.11.]	282
10.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7.12.06.]	284
11.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7.12.13.]	286
12.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018.09.19.]	290



I

총리급 합의

1. 7·4 남북공동성명

The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1972.07.04.]

국문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증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 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양상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Recently, talks were held in Pyongyang and Seoul to discuss the problems of improving South-North relations and of unifying the divided country.

Lee Hu-rak, Director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 Seoul, visited Pyongyang from May 2~5, 1972, and held talks with Kim Young-joo of the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of Pyongyang; Vice Premier Park Sung-chul, acting on behalf of Director Kim Young-joo visited Seoul from May 29~June 1, 1972, and held further talks with Director Lee Hu-rak.

With the common desire of achiev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nation as early as possible, the two sides engaged in a frank and openhearted exchange of views during these talks, and made great progress towards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In an effort to remove the misunderstandings and mistrust, and mitigate the heightened tensions that have arise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s a consequence of their long period of division and moreover, to expedite unification, the two sides reached full agreement on the following points.

1. The two sides agre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as a basis of achieving unification:

First, unification shall be achieved independently, without depending

on foreign powers and without foreign interference.

Second, unification shall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without resorting to the use of force against each other.

Third, a great national unity as one people shall be sought first, transcending differences in ideas, ideologies, and systems.

2. In order to ease tensions and foster an atmosphere of mutual trus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two sides have agreed not to slander or defame each other, not to undertake military provocations whether on a large or small scale, and to take positive measures to prevent inadvertent military incidents.
3. In order to restore severed national ties,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to expedite independent peaceful unification, the two sides have agreed to carry out numerous exchanges in various fields.
4. The two sides have agreed to actively cooperate in seeking the early success of the South-North Red Cross talks, which are currently in progress with the fervent support of the entire people of Korea.
5. In order to prevent the outbreak of unexpected military incidents, and to deal directly, promptly, and accurately with problems arising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two sides have agreed to install a direct telephone line between Seoul and Pyongyang.
6.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 items, to solve various problems existing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o settle the

unification problem on the basis of the agreed principles for unification, the two sides have agre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co-chaired by Director Lee Hu-rak and Director Kim Young-joo.

7. Firmly convinced that the above items of agreement correspond with the common aspirations of the entire Korean people, all of whom are anxious for an early unification, the two sides hereby solemnly pledge before the entire Korean people to faithfully carry out these agreed items.

Upholding the instructions of their respective superiors

Lee Hu-rak

Kim Young-joo

Source: Ministry of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 Website)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1991.12.13.]

국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1992년 2월 19일 발효

The South and the North,

In keeping with the yearning of the entire Korean people of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divided land;

Reaffirming the three principles of unification set forth in the July 4 (1972)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Determined to remove the state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and achieve national reconciliation;

Also determined to avoid armed aggression and hostilities, reduce tension and ensure peace;

Expressing the desire to realize multi-faceted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advance common national interests and prosperity;

Recognizing that their relations, not being a relationship between states, constitute a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stemming from the process towards reunification;

Pledging to exert joint efforts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Hereby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SOUTH-NORTH RECONCILIATION

Article 1: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recognize and respect each other's system.

Article 2: The two sides shall not interfer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rticle 3: The two sides shall not slander or vilify each other.

Article 4: The two sides shall not attempt any actions of sabotage or subversion against each other.

Article 5: The two sides shall endeavor together to transform the present state of armistice into a solid state of pea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shall abide by the present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July 27, 1953) until such a state of peace has been realized.

Article 6: The two sides shall cease to compete or confront each other in the international arena and shall cooperate and endeavor together to promote national prestige and interests.

Article 7: To ensure close consultations and liaison between the two sides, South-North Liaison Offices shall be established at Panmunjon within there (3) months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8: A South-North Politic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within one (1) month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discussing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the accords on South-North reconciliation.

CHAPTER II

SOUTH-NORTH NON-AGGRESSION

Article 9: the two sides shall not use force against each other and shall not undertake armed aggression against each other.

Article 10: Differences of views and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wo sides shall be resolved peaceful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Article 11: The South-North demarcation line and areas for non-aggression shall be identical with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pecified in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July 27, 1953 and the areas that have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ide until the present time.

Article 12: To implement and guarantee non-aggression, the two sides shall set up a South-North Joint Military Commission within three (3) month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the said Commission, the two sides shall discuss and carry out steps to build military confidence

and realize arms reduction, including the mutual notification and control of major movements of military units and major military exercises,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exchanges of military personnel and information, phased reductions in armament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ttack capabilities, and verifications thereof.

Article 13: A telephone hotline shall be installed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two sides to prevent accidental armed clashes and their escalation.

Article 14: A South-North Military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within one (1) month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discuss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the accords on non-aggression and to remove military confrontation.

CHAPTER III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5: To promote and integrated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welfare of the entire people, the two sides shall engage i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including the joint development of resources, the trade of goods as domestic commerce and joint ventures.

Article 16: The two sides shall carry ou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literature and the arts, health, sports, environment, and publishing the journalism including newspapers,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and publication.

Article 17: The two sides shall promote free intra-Korean travel and contacts for the residents of their respective areas.

Article 18: The two sides shall permit free correspondence, reunions and visits between dispersed family members and other relatives and shall promote the voluntary reunion of divided families and shall take measures to resolve other humanitarian issues.

Article 19: The two sides shall reconnect railroads and roads that have been cut off and shall open South-North sea and air transport routes.

Article 20: The two sides shall establish and link facilities needed for South-North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shall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of intra-Korean mail and telecommunications.

Article 21: The two sides shall cooperate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various other fields and carry out joint undertakings abroad.

Article 22: To implement accords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various other fields, the two

sides shall establish joint commissions for specific sectors, including a Joint South-North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Commission, within three (3) month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3: A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within one (1) month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discussing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the accords on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CHAPTER IV

AMENDMENTS AND EFFECTUATION

Article 24: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by concurrence between the two sides.

Article 25: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x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December 13, 1991

Chung Won-shik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Chief delegate of the
Sou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Yon Hyong-muk
Premier Administration
Counci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 of the Nor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Source: United Nations Peacemaker. <<http://peacemaker.un.org>>.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3.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 총리회담 합의 [2007.11.16.]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 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 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 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 중에 실시하며 2008년 안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 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 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⑪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 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 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 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 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 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 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 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 기간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 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 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 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 교환 및 관측 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 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 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 장비 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 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 덕 수

북남총리회담
북측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 영 일



II

주요 위원회 구성

1.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05.07.]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 연락사무소’ 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 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의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 남북 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 ③ 자기 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2.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05.07.]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 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을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3.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09.17.]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 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 협의회,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03.18.]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 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 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 기지 포함)교환에 관한 사항
-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 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행한다.

I	총리 겸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12.]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 ①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 ②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 ③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 ④ 쌍방은 자기 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 ⑦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 ⑧ 쌍방 위원장은 자기 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 ④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 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 ⑧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 ⑨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 ①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 ②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 ①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 ①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 ③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 ④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⑤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 ①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 ②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 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 ㉡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 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 ③ 남과 북은 자기 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 ②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 ③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 ④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12조 통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협의 및 수정·보충

- ①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 ②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

- ①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III

경제협력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1.01.30.]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실천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차과(부상)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정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체들을 둘 수 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한다.
- ③ 위원회는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사이에 분야별 실무협의회 회의를 운영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⑥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 시킬 수 있다.
- ⑦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⑧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 또는 남북장관급 회담 수석대표(단장)가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합의문건은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1월 30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책임참사
전금진

* 2001년 2월 3일 발효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공동보도문 및 합의문 (2차~13차) [2001~2007]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 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9월 18일에 쌍방이 동시에 각기 자기 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철도는 금년 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목표로 완공하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리-고성 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한다. 그리고 동해선 임시 도로는 금년 11월 말까지 연결하기로 한다.
 - ②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 ③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9월18일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

- ④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 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3.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 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홍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 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4. 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 등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운영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 t을 차관 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 t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7.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002년 8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미화 이백육십오 달러(US\$265)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 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 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북측은 남측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2년 8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식량 인도·인수 절차〉

1. 식량의 수량 및 품질

- ① 남측이 공급하는 쌀은 정미 40만 톤으로 한다.
- ② 제공되는 쌀은 습도 15.0%, 파쇄율 5.0%, 잡질 0.1%이하로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 및 유독성 박테리아나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포장

- ①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쌀’, ‘40kg’, ‘대한민국’의 표식을 한다.
- ② 선적과 하역 시 파손되는 포대의 보충을 위하여 2%에 해당하는 빈 포대를 제공한다.

3. 수송일정

남측은 차관제공합의서 서명 이후 3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키며 나머지 쌀의 조속한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4. 수송조건

- ① 남측은 남포항, 해주항, 흥남항, 원산항, 청진항, 송림항 중 북측이 통보하는 항구로 해상 수송하며,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여타 항구 및 육로 수송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남측은 편의에 따라 남측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 선박은 북측지역 항구 입·출항 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 ③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수송선박 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명단,

출항예정일 등을 매 출항 5일 전까지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식량인수회사는 매 출항 3일전까지 하역항과 하역준비상태를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 ④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흘수선, 하역능력, 작업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차관제공 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남측 식량인도회사에 제공한다.
- ⑤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 ⑥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 ① 제공되는 쌀은 선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선적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식량인수확인서를 남측 인도인원에 제공한다.
- ② 남측 인도인원은 3~4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 장면을 사진 및 녹화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 ④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6. 선적서류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매 선적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식량인수회사에

보낸다.

-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④ 품질 및 수량증명서
- ⑤ 식물검사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⑥ 원산지증명서

7. 검사조건

- ① 공급하는 쌀의 품질과 수량은 선적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 ② 납측은 공급되는 쌀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분배결과의 통보 등

- ① 북측은 쌀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 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 ② 북측은 분배문건 통보시점에 남측 인원들이 북측의 쌀 분배과정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 ① 북측은 자기 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 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 사이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를 이용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당면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동시에 빨리 진척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①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 건설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적극 취해 나간다.

이를 위해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는데 따라 11월 중에 공동측량을 하여 정하되 일자와 진행절차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며, 공사일정표를 교환하고 필요한 공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한다.

- ② 쌍방은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2002년 12월 하순에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①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며, 남측은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 ②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초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3.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 어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협의·확정되는 빠른 시일 안에 각기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이미 합의된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를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회의를 12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고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3년 2월초 서울에서 진행한다.

2002년 11월 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4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2월 14일

서 울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을 위한 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 지점에서 2003년 6월 10일경에 진행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이 사업자간에 합의되는데 따라 6월 하순에 개최되도록 하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6월 중에 진행하고, 장마 전에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북측은 금년 장마에 대비하여 남측에 임남담의 방류와 관련한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건설을 위한 통신·통관·검역합의서 등을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발효시키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강산 육로 및 해로 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남과 북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협조를 진행해 나가며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8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과 실무접촉들은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5월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동포애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US\$265(미화 이백육십오 달러)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 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쌀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인도·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북측은 남측의 분배투명성 확인 보장 등 쌀 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8.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3년 5월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식량 인도·인수 절차〉

1. 쌀의 수량 및 품질

- ① 남측이 공급하는 쌀은 정미 40만 톤으로 한다.
- ② 제공되는 쌀은 습도 15.0%, 파쇄율 5.0%, 잡질 0.1% 이하로 검역 상 중요한 병해·충 및 유독성 박테리아나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포장

- ①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쌀’, ‘40kg’, ‘대한민국’의 표식을 한다.
- ② 선적과 하역 시 파손되는 포대의 보충을 위하여 2%에 해당하는 빈 포대를 제공한다.

3. 수송일정

남측은 차관제공합의서 서명 이후 3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키며, 매달 쌀 10여 만 톤씩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수송조건

- ① 남측은 우선 남포항, 해주항, 흥남항, 원산항, 청진항, 송림항 중 북측이 통보하는 항구로 해상 수송하며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남측은 편의에 따라 남측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선박의

북측 지역 항구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 ③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수송선박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명단, 출항 예정일 등을 매 출항 5일 전까지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식량인수회사는 매 출항 3일 전까지 하역항과 하역준비상태를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 ④ 쌍방은 지정된 식량인도회사와 식량인수회사를 차관제공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 때 북측은 쌀의 품질과 관련한 검역기준을 남측에 통보한다.
- ⑤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흘수선, 하역능력, 작업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차관제공 합의서 체결후 7일 이내에 남측 식량인도회사에 제공한다.
- ⑥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 ⑦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 화물해상운송계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 ① 제공되는 쌀은 선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선적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식량인수 확인서(부록)를 남측 인도 인원에게 제공한다.
- ② 남측 인도인원은 3~4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의 장면을 사진 및

녹화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 ④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6. 선적서류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매 수송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식량인수회사에 보낸다.

-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④ 품질 및 수량증명서
- ⑤ 식물검사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⑥ 원산지증명서

7. 검사조건

- ① 제공하는 쌀의 품질과 수량은 남측의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 ② 남측은 제공되는 쌀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분배결과의 통보 등

- ① 북측은 쌀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 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

한다.

- ② 북측은 매 분배문건 통보 후 10일 이내에 남측 인원들이 식량 분배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분배현장은 동·서해지역 각각 한곳 이상으로 하고, 이때 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촬영을 허용한다.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 ① 북측은 자기 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 지역 체류 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문산-개성 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 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조속히 북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 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하며 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의 후속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 초순경에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북 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협의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에 따라 식량 제공과 분배현장 방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관련하여 이미 제공된 쌀 10만 톤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을 9월 중에 진행하되 장소는 동·서해 지역에서 모두 3곳으로 하며 방문인원 수는 5~7명씩으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0월 하순경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8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에서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위해 자재·장비 제공 등 실무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경의선에서는 2003년 12월 8일, 동해선에서 12월 2일 상호 상대측 공사현장 방문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첨부된 부록내용과 같이 한다.
제8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하위 규정의 제정·공포,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단관리기구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2004년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2003년 11월 하순 평양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사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거래물품에 대한 시범적인 원산지확인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등을 올해 안에 협의·타결하기 위한 남북경제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004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진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I	총리급 합의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부록)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구간 현장방문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사구간 현장방문 (이하 "현장방문" 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현장방문 인원은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대표와 관련 실무인원을 포함하여 각기 10여 명으로 하며 현장방문 구간은 경의선은 판문역~도라산역까지, 동해선을 남북 관리구역 내로 한다.
현장방문 인원,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현장방문 3일 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2. 현장방문 인원들의 왕래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로 가며, 각기 1~2대의 자기 측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3. 현장방문시 쌍방은 촬영기, 사진기,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며 공사 상황에 관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현장방문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4. 현장방문 인원들은 상대측 공사구간 방문시 상대측의 안내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이 자기측 지역 방문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대표와 관련실무자 등 7~8명의 인원으로 동행한다.
6. 남과 북은 현장방문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해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 중으로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강산관광특구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4.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데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회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한다.

2004년 3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4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 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산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 - 개성공단 통신센터 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1단계 100만평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전되는데 따라 다음 구역 개발에 대한 내부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개통을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이에 앞서 이미 합의한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 경에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에서 연결도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2004년 10월까지 개통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채택·발효시키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 간에 합의하였거나 가서명된 합의서들을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이미 서명·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며, 쌍방 선박들의 영해통과 시기와 항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민간급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6. 남측은 동포해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 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6월 중 개성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해운실무접촉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 밖의 필요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들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진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우선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쌍방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9월 중에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에 따라 9월 초부터 협회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구성·파견하여 개성공단 현지에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한다.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하며 이미 계획된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올해 안에 끝내고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각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 분계역사 건설과 기술설비설치 작업 등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올해 안으로 철도 개통식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8월 중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며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을 한다.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를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한다.
6.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를 계기로 실현시키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한다.
7.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상호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에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들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발표시키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11월중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10. 남과 북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과학기술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한다.
11.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 톤을 차관 방식으로 제공한다.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은 9~10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새로 개설한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합의 한대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과 이미 여러 차례 합의한 철도·도로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이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민간 및 당국 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제협력문제들을 신속하게 지원 또는 협의추진하며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와 산하 실무접촉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5년 10월 28일

개 성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민족공동 이익의 견지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가지고,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필요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단독조사 결과 검토와 공동조사 실시계획, 홍수 예보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7월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7월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일정,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사중재 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의 명단 교환과 회의 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는 2006년 9월 중 평양에서 진행하며, 날짜는 문서교환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2006년 6월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맞게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열차시험운동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및 필요한 자료 보장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를 5월 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한 남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인원들의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 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007년 7월 중 남측지역에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진동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3.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공동보도문 및 합의서(2차~4차) [2003~2013]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00년 12월 16일 서명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 통지문을 2003년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4. 남과 북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의 장소와 일자는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문산(파주)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경제협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는 3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국·과장급으로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미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대상에 대하여 11월 중순에 원산지확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개최시기와 장소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에 관한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청산결제 신용한도, 품목선정, 이자율 등을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청산결제은행간 실무 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원만히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장소와 날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2일

문 산(파주)

I

총리급 합의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양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 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통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 간의 통신연결 문제를 협의하여 서울-개성-평양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결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양

4.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5.07.12.]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사업을 도모하고 경제거래를 직접 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하 ‘협회사무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설·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협회사무소가 경제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시키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규모를 점차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제1조 명칭과 위치

1. 협회사무소 명칭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라고 한다.
2. 협회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의 남과 북이 합의하는 부지에 남측이 맡아 올해를 완공 목표로 건설하며 남과 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다만, 협회사무소가 건설되기 전까지 별도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지위와 구성

1. 협회사무소는 남북사이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쌍방 당국의 연락, 지원 및 협의 보장 기관이다.
2. 협회사무소는 남과 북의 당국에서 각기 파견하는 국장급 소장을 포함한 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보조인원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남과 북은 협회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사무실과 면담실, 상품전시실, 다목적 회의실 등을 둔다.

4. 쌍방은 협의사무소 인원을 교체할 경우 교체일 14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제3조 기능

1. 남북사이의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연락, 지원, 자문 기타 편의 보장
2. 남북당국 및 민간경제협력 당사자사이의 회담 및 면담 장소 보장
3. 남북사이의 교역·투자 관련 자료 제공
4. 투자대표단 교환, 상품전시회, 실무연수, 거래 및 투자상담회 등 남북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활동 보장
5. 기타 남북사이의 거래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쌍방 당국이 합의하여 위임하는 임무

제4조 운영 및 관리

1. 쌍방은 전화, 팩스, 협의사무소 인원사이의 직접접촉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협의사무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3. 쌍방이 각기 제정한 공휴일에는 접촉하지 않는다.
4. 협의사무소의 쌍방 사무실과 설비 등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하며 공동사용부분은 공동으로 한다.
5. 기타 협의사무소 운영·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협의사무소의 활동 보장

1. 남과 북의 협의사무소 인원들은 협의사무소 안에서 부록 양식의 출입증을 항시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2. 북측은 당국 간 회담대표단의 출입절차 및 신변안전을 남측 협의사무소 인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3. 남측은 협의사무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및 설비 등을 보장하며 북측은 남측 협의사무소 운영·관리와 관련한 물자와 설비의 반출·반입과 차량 운행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4. 남측 협의사무소와 남측지역 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한다.

제6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 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또는 그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7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8조 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효력발생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5년 7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5년 7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7.11.16.]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 ② 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 ② 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 ③ 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 ③ 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⑤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7.12.06.]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 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 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 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 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 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 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 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 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 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부총리
전승훈

7.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6.06.06.]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도모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데 따라 자기측 몫으로 분배되는 지하자원 생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및 수량, 수송 경로 등 세부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2006년 중에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한다.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 1%로 하며, 원리금에 대한 연체발생시 그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4%로 한다.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하며,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4. 북측은 경공업 협력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5.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슘·크롬 등 합의되는 광종의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한다.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의 이행 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한다.

6.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되는 협력 대상의 광물 탐사 자료, 굴진, 채광, 선광 등 설비자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자료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보장한다.

7.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현지 공동조사, 그에 따르는 투자효과성 평가, 필요한 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도로·철도·항만·전력·용수·통신 등 기반시설, 해당인원들의 출입 및 체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 운행 등을 적극 보장한다.

8. 남과 북은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 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쌍방은 이행기구가 통보되는 날부터 15일 내에 접촉을 가지고,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측은 8월부터 합의되는 품목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

9.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0. 이 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1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며,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006년 6월 6 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8.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2007.04.22.]

남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1항, 2항, 8항, 1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 1항과 2항의 “2006년”을 “2007년”으로 수정한다.
2. 8항 중 “1개월”을 “10일”로 하고, “8월”을 “6월”로 수정한다.
3. 10항을 “이 합의서의 효력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1항에 따르되,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4. 이 수정·보충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진동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9.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2007.07.07.]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공업 협력

제1조 남측은 북측에 2007년도 의복류(2,700만 달러), 신발(4,200만 달러), 비누(1,100만 달러) 생산에 필요한 미화 8,000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소요되는 해상 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 다만, 북측지역 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및 채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 ②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품목, 수량, 가격은 《부록1》과 같이 한다. 다만, 이 합의서가 서명되는 시점까지 수량,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접촉을 통해 협의, 확정하여 《부록1》에 첨부한다.

제2조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38mm) 500톤을 7월 25일 인천항—남포항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제3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1차로 2007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기술지원을 진행하며 추가로 3회(2007년 9월, 11월, 12월) 실시한다.

제4조 북측은 남측에서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제2장 차관계약 및 원자재 대가 상환

제5조 이 합의서에 따르는 경공업 원자재의 차관제공과 그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제6조 북측이 2007년도에 상환(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하는 품목은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하며 품목·수량·가격은《부록2》와 같이 한다.

상환 시기는 2회(경공업 원자재 50%, 100% 제공된 시점)로 하며 상환물자의 인도·인수는 FOB 조건으로 하고, 가격기준은 상환 시기의 국제시장가격(London Metal Exchange, 런던 금속거래소) 또는 남과 북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7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 상환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부록3》과 같이 한다.

제8조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97%를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환한다.

제3장 지하자원개발 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검덕광산(아연), 룡양 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 등의 광산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5월 4일 제2차 실무협약에서 합의한 광산관련 자료를 2007년 7월 19일 남측에 제공하며, 현지공동조사를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되,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차 현지공동조사가 끝난 후 2차 조사는 9월 초, 3차 조사는 10월 중에 실시하되, 투자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제10조 북측은 투자광산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공동 투자대상 광산의 일반실태, 탐사 및 매장량 실태(지질 및 광상) 등 광산투자와 관련된 조사

공동투자를 위한 대상광산의 채광, 선광, 미광, 운반, 전력계통과 설비 및 가동실태, 생산현황, 노동력 및 복지시설 조사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현지 조사 시 남측인원들의 북측 해당기술자·관계자 면담, 해당기관 방문

제11조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투자당사자 선정과 투자규모, 시기, 방법 등에 관한 투자계약은 현지조사 및 평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수정·보충 및 효력발생

제12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3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7월 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

김형석

민족경제협력연합회장의

위임을 받아

실장

리영호

10.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 공동보도문 [2007.05.04.]

남과 북은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2007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및 제13차 회의에서 합의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38mm) 500톤을 6월 27일 인천항↔남포항간 정기해상 수송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2.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한다.
3.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첨부: 관련 자료 목록)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5.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차 실무협의를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4일

개 성

11.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5.07.31.]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맞게 농업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2~4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차관(부상)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각기 4~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농업협력문제들을 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농업협력 및 교류사업들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

이행한다.

- ③ 위원회는 쌍방간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산하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위원회 본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본 회의 사이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본 회의와 실무협의회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본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⑤ 위원회 본 회의와 실무협의회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본 회의와 실무협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⑦ 위원회 본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⑧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 본 회의 및 실무협의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경우 쌍방위원장은 이를 남북장관급회담 자기측 수석대표(단장)에게 보고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7월 31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권호웅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전 문서교환방식으로 서명·발효

12.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2005.08.19.]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한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잡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북남농업협력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I

총리급 합의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양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13.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2007.12.18.]

남과 북은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농업협력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총사업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북측에 상시사육두수 연산 1천톤 규모(5,000두)의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장비 등의 품목 및 수량, 수송경로 등 세부 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측의 「농업성 축산관리국」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차관 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3. 자재·장비의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한다.
수송비용과 관련하여 육로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장소까지, 해로의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수송은 남측이 부담한다.
그외 북측지역 내에서의 수송·하역·항만비용,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4. 사업기간(2년) 내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는 남측이 보장하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금액에 포함시킨다.

5. 북측은 남측인원들의 북측지역내 체류시 통신·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6.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8일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배광복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북측 단장
전호현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위문
V	군사적 조치

14.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2007.11.05.]

남과 북은 2007년 11월 5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명시된 농업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우선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을 착수하되,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내에 양돈협력사업을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 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며 2007년 11월 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2.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 건축과 종돈·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차관합의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체결한다. 구체적인 제공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쌍방의 이행기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북측은 양돈협력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며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금년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5일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기혁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북측 단장
김영철

I

총리급 합의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위문

V

군사적 조치

15.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7.12.15.]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 규모는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제반 부지조건을 조사하기로 한다.
 - ② 남과 북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 자료와 남측 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물자의 반입 등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필요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저장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물자 등에 대한 대책을 쌍방이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건설규모와 건설계획 등의 협의를 위해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중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대상수역 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 ②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에 개성에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5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측위원장

박현출

북남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북측위원장

리만성



IV

철도, 도로, 해운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1.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2차-12차) [2002-2006]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2차)]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2차 회의를 200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접속지점, 계획고를 확정하기 위한 공동측량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동측량 구간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에서 200m 길이와 철도·도로로 연결 남북관리구역 쪽으로 한다.
2. 공동측량 기간은 동해선에서 2002년 11월 26일과 11월 27일, 경의선은 11월 29일과 30일 사이로 하며, 매일 09:00부터 15:00까지 진행한다.
3. 공동측량 인원은 쌍방이 각각 철도 및 도로전문가 10명, 지원인원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쌍방은 공동측량 인원 명단을 측량하기 하루 전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통보한다.
4. 공동측량은 철도, 도로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정확한 측량보장을 위해 필요한 현지측량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5. 공동측량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쌍방 공동측량단 사이에 현장에서

협약하여 정한다.

6. 공동측량인원들은 측량설비와 기구들만 휴대하고 들어가 작업하도록 한다.
7. 공동측량결과 자료는 측량 후 최단기간 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상호 통보확정한다.
8. 이 문건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11월 20일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실무접촉이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철도·도로연결공사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그와 관련한 실무적 대책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 연결이 합의된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자재·장비가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수송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 공단 착공전까지 개통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경의선 임시도로 개설과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 도로 통행을 위한 쌍방 군사당국 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를 해당부문에 각기 제기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차량운행기본합의서를 필요한 서명·교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하였으며,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 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4.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2차회의를 2003년 1월 중순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2년 12월 17일

금강산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을 2003년 3월 10일에서 12일까지 개성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 연결공사를 3월 말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동시에 착수하여 자기측 방향으로 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한다.

가.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궤도 연결공사 착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공사착수 5일전까지 협의·확정한다.

나. 남측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착수 5일 전까지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이용을 위한 사용결과 통보 및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가. 1차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방문은 경의선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해선에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나. 현장방문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은 단장(대표1명), 기술인원 4~5명을 포함하여 8~9명 정도로 구성한다.

다. 북측은 남측 기술인원들이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통보 내용 확인과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측은 현장방문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라 장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

- 라. 남측 기술인원들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되, 남측 인원들에 대한 명단제출, 신변안전, 편의제공 등은 종전관례에 따른다.
- 마. 북측은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방문 5일 전에 1월까지 제공된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및 현장방문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며, 매월 자재·장비 사용결과를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명의로 남측에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1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첨부 1, 첨부 2와 같이 한다.
4.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자재·장비들을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인도·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5.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전체 제공분과 열차운행합의서를 문서 교환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03년 3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사인원을 제외한 행사참가 인원은 행사 2일 전에 상호 통보하며 행사인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남북철도연결행사의 형식, 규모, 방법 등은 본합의서의 부록 1에 따라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의 첨부 1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은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확정한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해 1차분 자재를 부록 3과 같이 합의 조정한다.
3. 남측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장비 설치와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6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에 진행하며 북측은 기술지원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기술지원은 본합의서의 부록 2에 따라 진행한다.
4.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용 자재·장비에 대한 인도·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선·동해선의 임시도로를 이용한다.
왕래하는 인원들의 출입은 이미 정한 출입절차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신호·통신·전력계통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 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진행한다.

2003년 6월 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1〉: 남북철도연결 행사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행사주관은 국장급으로 하며, 행사참가 인원은 경의선·동해선에서 공사인원과 행사인원, 기자들을 포함하여 각기 50명 정도로 한다.
2. 행사 사회는 경의선에서는 남측이, 동해선에서는 북측이 하며 연결사는 각각 3분 정도로 하되, 경의선은 남측이, 동해선은 북측이 먼저 진행한다.
연결사와 사회자의 발언은 행사 2일전에 문서로 상호 교환한다.
3. 연결행사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사는 쌍방 행사주관자들의 연결사 낭독 이후 공사인원들이 레일을 고정시키고, 자갈 정리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로 한다.
 - ② 사회자는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간단한 안내를 한다.
4. 철도 연결행사와 관련한 기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사참가자들의 복장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일체 표식을 하지 않는다.
 - ② 철도연결행사장 간판은 철도연결 지점 한쪽에 세운다.
행사장 간판의 규격은 높이 3m, 너비 0.8m로 하고 경의선 행사장에는 남측이, 동해선 행사장에는 북측이 각각 1점씩 제작 설치한다. 간판 앞뒤 면에는 [남북철도연결행사, 2003년 6월

14일]라는 글을 양측의 표기 방식에 따라 흰 바탕에 청색으로
명기한다.

- ③ 행사에 필요한 방송설비는 쌍방이 각자 편리한대로 이용하되
철도 연결행사지점 자기 측 지역에 마이크를 각각 1대씩 설치한다.
- ④ 기자들의 취재는 원칙적으로 자기 측 지역에서 진행하며 행사장면
외에 다른 대상들을 촬영하지 않는다.
- 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에 지장을 주는 방송, 공연 등은 하지
않는다.

I

총리
합의

II

주
무
관
회
의
구
상

III

경
계
합
의

IV

철도, 도로, 해운
공계, 해운

V

군사적
조치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2〉:

남북철도·도로연결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 정비를 위한 남측 인원들의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다.

1. 콘크리트 혼합장, 파쇄장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남측인원들의 기술지원은 동·서 각 지역에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
2. 남측이 제공한 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남측인원의 기술지원은 동·서 각 지역에서 각각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경의선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7월 21일부터 7월 30일경까지 하며, 동해선은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7월 10일부터 7월 19일경까지 실시한다.
3. 남측은 기술인원을 동·서해 각 지역에서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과 수리정비에 각각 6~7명 보장한다.
4. 남측 기술인원들의 왕래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로 하며, 운송수단은 동·서해 소형버스 각각 2대와 수리정비를 위한 이동 정비차 각각 1대를 남측이 보장하고, 운전인원은 북측이 보장한다.
5. 기술인원들의 숙식장소는 경의선에서는 [자남산 여관], 동해선에서는 [현대해상호텔]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하며 숙식비용은 경의선은 북측이, 동해선은 남측이 부담한다.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3〉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남과 북은 200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을 갖고 1차분 자재·장비 제공 품목 및 수량을 다음과 같이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구분	조 정 전			조 정 후		
	순번	품 목	수 량	순번	품 목	수 량
자재	22	디젤유	2,665t	22	디젤유	4,165t
	24	모빌유	100t	24	모빌유	150t
	25	변속기유	12t	25	변속기유	22t
	26	그리스	10t	26	그리스	20t
	27	방추유	20t	27	방추유	35t
	28	제동유	10t	28	제동유	18t
	29	부동액	20t	29	부동액	35t
				36	무수축몰타르	96톤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을 2003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성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가 10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등은 앞으로 쌍방간 협의되는데 따라 그 품목 및 수량을 첨부 1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 ① 콘크리트혼합장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동해선에서 9월 16일부터 필요한 기간 진행하며, 남측 기술인원들은 경의선 5~6명, 동해선 7~8명으로 한다.

- ② 남측이 제공한 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은 우선 동해선에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경의선에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인원은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제공 및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하기로 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지원 날짜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④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3.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에 준하여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진행하며,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술협력을 한다.

남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10월말까지 끝내고 설계자료를 북측에 제공한다.
4.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본도로나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의 이동통로로 본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 차량운행사무소 설치문제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빨리 확정하기로 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은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2003년 8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합의사항

1. 신호분야

번호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1	군사분계선 열차확인장치	·남북간 분계선 열차통과 확인장치 설치	
2	폐색방식	·연동폐색	
3	연동장치	·전기연동장치	역구내 취급
4	케이블설치	·케이블은 관로사용 매설	
5	건널목	·건널목 안전설비는 설계결과에 따라 반영 (방법 및 수량)	
6	신호기 색등배열 및 현시방법 역운영방식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양측 신호등 배열과 현시방법 등을 일치시킴)	
7	궤도회로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8	진로표시기 구성방법 및 설치방법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9	신호전원	·신호전원은 배전선로 전원 ·예비전원은 축전지	
10	자동열차 정차장치	·설계 반영(수량은 열차 수량에 따라 반영)	
11	기관차정비선 화차수리선 등에 대한 조작설비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12	건축한계· 차량한계 기준	·북측 건축한계, 차량한계 적용	

2. 통신분야

번호	구분	합의내용	비고
1	군사분계선 남북통신 연결방법 및 통신케이블 종류	·북측방향 좌측으로 시설 ·광케이블 24C×1회선 ·동케이블 0.65×25P 1회선	
2	전송설비	·경의선 3대, 동해선 3대, 남북연결용 2대: 계8대	
3	수자식교환기	·개성 1대, 금강산 1대 설치	
4	무선통신	·열차운행에 필요한 무선통신설비 설계반영	
5	영상감시장치	·주요역 설치(판문, 개성, 감호, 금강산)	
6	역구내통신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7	역사령통신	·열차운행관련 역구내 통신회선구성 설계반영	
8	역구내 부속설비	·열차운행 및 역운영에 필요한 설비 설계반영	

3. 전력분야

번호	구분	합의내용	비고
1	군사분계선 남북 전원연결 관계	·북측방향 우측으로 신설	
2	전원설비	·경의선 - 개풍변전소~개성간 배전선로 신설 ·동해선 - 고성변전소~고성간 배전선로 신설	
3	예비전원	·경의선, 동해선 북측 인근선로에서 자체해결	
4	배전선로 사용전압	·고압: 6.6kV 3상 60Hz ·저압: 380V, 220V	
5	사용기기 종류 (변압기, 차단기 등)	·변압기: 몰드식 ·차단기: 진공식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 인도·인수를 10월말부터 시작하여 쌍방 간 합의된 공사일정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1차 사용현장방문을 경의선에서 11월 8일, 동해선에서 11월 5일 실시하기로 한다.

사용현장 방문 및 암반 제거용 자재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1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6차 기술 지원을 경의선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동해선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 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 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4. 남과 북은 남측이 전달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자료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확정되는 데에 따라
자재·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과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3년 10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설공업성 부상

최영건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1〉

암반 제거용 자재 수량 및 제공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에 따라 북측 자재 사용현장을 방문하고 상호 확인한 결과 자재 수량, 제원을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1. 암반제거용 자재는 뉴마이트플러스 I (50mm, 25mm), 전기뇌관(6M) 및 관련 부속장비를 제공한다.

뉴마이트플러스 I (50mm, 25mm)의 수량은 352.8톤으로 하며, 전기 뇌관(6M)은 246,960개로 한다.

쌍방 협의를 통해 자재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후 자재 잔량 및 비소모성 부속장비는 반환하도록 한다.

2. 자재는 주1회 경의선, 동해선 육로를 통하여 수송하되, 1회 제공량은 동·서해 뉴마이트플러스 I 16톤, 전기뇌관 11,200개 정도로 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제공량 및 제공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일전 상호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3. 자재는 폭약 및 뇌관을 구분하여 전문수송차량으로 운반하며 인도인원 이외에 화약류 관리기사 1명이 동행하도록 한다.

수송차량은 앞, 뒤면에 “화”를 부착하고 일반자재수송차량과 구분하여 안전하게 수송한다.

4. 자재에 대한 인도·인수는 쌍방 해당 전문가들이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북측 자재창고에서 진행한다.

북측은 수송 차량의 통행, 자재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조치를 하며, 남측 인도인원이 자재 입·출입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북측은 초기 3회 자재 사용상황을 남측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하되, 참관인원은 화약류관리기사 1~2명을 포함하여 3~4명으로 한다.

1차 참관은 자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자재 1차 제공일로부터 3~4일간 실시하기로 하며, 2, 3차 참관일정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북측은 남측 참관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참관의 절차와 방법 등은 남북 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2 (남북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자재 사용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는데 협조한다.

6. 남과 북은 상호 합의하여 자재 수송과 안전보장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부록 1(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를 2004년 2/4분기부터 착수하기로 한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하여 공사일정대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쌍방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며, 구체적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남측은 동해선 북강·남강 교량을 합성보로 2004년 1월 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북측은 이에 앞서 현장기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부록 2와 같이 조정하며, 레일, 침목 등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7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동해선은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할 기술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실무접촉 포함)는 문서교환방식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정한다.

2003년 12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설공업성 부상

최영건

〈제8차 합의서 부록 1〉

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

구분		합의사항
신호	입환표지	· 감호역, 판문역 입환표지를 추가하여 설계
	연동도표	· 개성, 손하, 판문역 연동도표를 보완하여 설계
	궤도회로	· 전철운행을 반영하여 설계
	장내신호기	· 유도신호를 포함하여 설계
통신	통신케이블	· 통신케이블 선종 변경(0.65×25P⇒0.9×15P)
	증폭기	· 금강산역사 증폭기에 콘솔(CONSOLE)을 추가하여 설계
전력	전력케이블	· 배전선로 케이블 규격 변경(100mm ² ⇒150mm ²)

〈제8차 합의서 부록 2〉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구분	조정전			조정후			비고
	순번	품목	수량	순번	품목	수량	
1차분 자재	16	강 재	3,550t	16	강 재	3,300t	공여
1차분 장비	39	업무용 승용차	8대	39	업무용 승용차	10대	공여
궤도 자재	2	PC 침목 (50kg PCT 코일식)	96,903개	2	PC 침목 (50kg PCT 코일식)	96,903개	공여
					일반형	77,937개	
					곡선형	18,966개	
	5	콘크리트침목체결구	399,241개	5	콘크리트침목체결구	399,241개	공여
					50kg용 8mm	342,693개	
					50kg용 10mm	17,476개	
					50kg용 12mm	17,476개	
					50kg용 14mm	21,596개	
궤도 장비	4	발전기	8대	4	발전기	12대	공여
	7	원형디스크날	100개	7	원형디스크날	200개	공여
	26	전기그라인드	4대	10	전기그라인드	8대	공여
				27	난방기기	6대	공여
도로 자재	13	디젤유	4,480톤	13	디젤유	4,380톤	공여
	14	휘발유	41톤	14	휘발유	90톤	공여
	24	아스팔트	9,850톤	24	아스팔트	9,750톤	공여
				37	뉴마이트플러스 (50, 25mm)	352.8t	공여
				38	전기뇌관(6M)	246,960개	공여
				39	발파기 등 부속장비	4조	임대
				40	조명등(일식)	30조	공여
도로 장비	17	지게차	2대	17	지게차	0대	임대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4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성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완공을 위하여 도로 포장용 자재·장비를 3월부터, 동해선 교량상판을 5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하여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 및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 ① 제8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동해선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며, 남측 기술지원 인원은 각각 7명씩으로 한다.
 - ②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은 경의선을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동해선을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각각 10명 내외로 한다.
 - ③ 동해선 암반제거용 자재 제공이 끝나는데 따라 2일간 자재 사용현장 방문을 진행하기로 한다.
 - ④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와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1(암반제거용 자재 수량 및 제공 절차와 방법)에 준한다.

3. 남과 북은 차량운행사무소 설치·운영문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남북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합의하기로 한다.

이 합의서는 2004년 2월 26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설공업성 부상
최영건

I

총리급 합의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계획설계를 확정하고, 남측은 9월말까지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를 제공한다.

남측은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 기초공사에 필요한 기초도면을 8월 초순 북측에 제공한다.

쌍방은 분계역사 등의 건축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건축시공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확정한다.

2. 남측은 10월 중 도로 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자재 제공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① 분계역사 등 건축과 관련한 기술지원은 8월 초순부터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경의선·동해선에서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②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와 관련한 장비 설치 및 시공부분 기술 지원은 7월 하순부터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경의선·동해선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③ 제공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10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동해선에서 7월 13일부터 7월 22일

까지, 제11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동해선에서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 ④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4.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본 합의서 부록과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차기 회의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4년 7월 1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2.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2.12.06.]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며 이를 남북 “차량운행사무소”라고 부른다.
2. 남과 북의 분계주차장 사이 도로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운행노선을 오가는 각종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 등)을 “운행차량”이라고 한다.
3.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상,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을 “사고”로 본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 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사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제3조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운행하는 차량의 통제문제
- ②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처리
- ③ 운행구간에서 정상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 ④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 ⑤ 기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①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은 쌍방 당국이 임명한다.
- ② 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남북사이의 관례대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의 차량운행사무소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차량운행 사무소와 제3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2. 양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결과를 운행날짜 이전에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준다.
3.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할 수 있다.
4.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규정,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사가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사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7.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한 차량과 그 운전사는 상대측 차량운행 사무소를 거쳐 돌려보낸다.

8. 남과 북은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며 그 이유가 제거되면 즉시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통보 및 통신·연락

1. 남과 북의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즉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지와 상호통보를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 직통전화, 모사전송장비(팩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정보교환

1. 남과 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기 측의 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2. 남과 북의 차량 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탑승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제한

1. 차량운행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

- ①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사회 경제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인원으로서 차량에 태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다.

- ① 각종 무기류, 흉기류, 화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험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의약품, 각종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사회 경제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④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여행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8조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1. 남과 북은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의 운전사와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1. 남과 북은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보장한다.
2. 차량의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쌍방이 동일한 인원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① 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② 차량과 화물의 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 경우
 - ③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측이 사고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
4. 남과 북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지나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 고장 시 조치

1. 차량이 운행구간에서 고장 발생 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측 구간에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연료 또는 부속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측에게 기술 또는 부속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3조 적용범위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 합의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및 관례에 따른다.

2.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방법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 측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 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8.02.13.]

남과 북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해 개보수 공사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설계 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8년 2월 13일

개 성

4.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04.13.]

제1조 정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 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 ② 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 ③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 ④ 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 ⑤ 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 발생일을 정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북 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회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 구간안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 시간 내에 입환 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 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 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 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 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 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 수송 계획>과 <일일 열차 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합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 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 복구 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 고장 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 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인수 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 직원 지명표(부록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 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 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 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10조 운임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 측 분계역 운전 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 ① 직통전화 및 운행 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
 - ② 모사전송장비(FAX)
 -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호 통보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하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당국 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 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4월 1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5. 철도 분계역사 등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관한 합의서 [2005.04.18.]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철도 분계역사 등의 설계 및 기자재 제공과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한다.

1. 남과 북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의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에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남측은 2004년 11월 5일에 북측에 전달한 설계 문건에 따라 해당 기자재를 제공하기로 한다.

분계역사 등 기자재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분계역사 등의 설계에 따라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수정하고 철도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자재·장비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신호·통신·전력 및 역사 건축공사 기술지원을 중단 없이 진행하여 철도 연결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합의서 부록(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기술지원 절차와 방법)에 준한다.

2005년 4월 1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설공업성 부상
최영건

6.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2007.05.13.]

남과 북은 2007년 4월 27일과 28일, 5월 13일 개성에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명칭 및 날짜

명칭은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으로 하며 날짜는 2007년 5월 17일로 한다.

2. 참가인원 및 참가급수

참가인원은 남측에서 100명, 북측에서 5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참가급은 장관급(상급)으로 한다.

3. 열차시험운행시간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4. 열차 시험운행 구간

경의선에서는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까지, 동해선에서는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제진역 까지로 한다.

5. 열차 시험운행 방식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남북 쌍방은 각기 자기 측 기관차에 객차 5량(남측발 전차 포함)씩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경의선은 북측 인원이 남측 문산역에 육로로 들어와 남측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북측 개성역까지 나가는 것으로 하고, 동해선에서는 남측 인원이 북측 금강산역에 육로로 나가 북측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남측 제진역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

6. 열차 시험운행 행사

열차출발역들에서 경과보고와 남북단장들의 기념사(축하발언)를 한 다음 열차시험운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7. 통행 및 세관검사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잠정합의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8. 통신방법

남북 철도통신에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5월 14일에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연결한다.

9. 열차운행 통보

남북 쌍방 분계역장들이 열차출발 5분전 상호 통보(폐색)하고 열차를 출발시키며, 열차출발을 상호 통지한다.

쌍방 분계역장들은 열차도착시 상대측에 통보한다.

10. 신호방식

신호는 수신호로 한다.

출발: 녹색기로 원형을 그려 신호한다.

정지: 적색기로 수평으로 신호한다.

11. 열차운행 안내

남과 북은 상대측 기관사가 동승하여 자기측 구간에 대하여 안내한다.

12. 철도시설 점검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각기 자기측 해당지역의 철도시설을 책임지고 점검 보강한다.

13. 문건교환

열차시험운행 참가인원에 대한 사진명단과 필요한 발언문들은 5월 16일 오전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하여 교환한다.

14. 열차시험운행 일정

【경의선】

- 10:00 북측 참가자 버스편으로 남측 출입사무소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0:10 북측 참가자 남측 출입사무소 출발
- 10:30 북측 참가자 문산역 도착, 열차시험운행 행사
- 11:30 남측 열차 문산역 출발
- 12:00 도라산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2:10 도라산역 출발
- 12:20 판문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2:40 판문역 출발
- 13:00 개성역 도착
- 13:00-14:30 동석식사
- 14:40 개성역 출발
- 15:00 판문역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 15:30 군사분계선 통과

【동해선】

- 09:30 남측 참가자 버스편으로 북측 통행검사소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 10:00 북측 통행검사소 출발
- 10:30 금강산역 도착, 열차시험운행 행사
- 11:30 북측 열차 금강산역 출발
- 11:50 감호역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 12:10 감호역 출발
- 12:30 제진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3:00-14:30 동석식사
- 14:30-15:00 제진역 통행 및 세관 검사
- 15:00 제진역 출발

• 15:30 군사분계선 통과

15. 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7년 5월 13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남측수석대표
김경중

북남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북측단장
박정성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7.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2007.11.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부속서는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이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열차운전취급, 화물운송, 철도시설·전기 분야 유지보수, 차량 인도인수, 사고처리·손해배상책임·편의보장 및 활동관계 등 남북 간 열차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여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남과 북이 정한 운행구간에서의 열차운행에 관련하여서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부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또는 분계역장회의에서 상호 합의하여 처리 한다.

제3조(정의) 이 부속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운행구간”이라 함은 분계역(역구내 포함)간을 말하며, 이 구간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을 운행열차라 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동력차”라 함은 동력을 가진 차량으로서 열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화차”라 함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3. “차장차”라 함은 화물열차 또는 공사열차의 후부에 차장을 승무시키기 위하여 연결하는 차량으로 차장실 설비를 갖추고 수동제동장치, 차장변, 조명장치, 공기압력계 등이 구비되어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특수차”라 함은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사고 복구용차, 모터 작업차 및 시험차 등으로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말한다.
 5. “불량차”라 함은 고장으로 정상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을 말한다.
- ③ “분계역”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열차를 정차하고,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 ④ “분계역장”이라 함은 분계역의 역무전반과 분계역 사이의 운전취급 업무의 담당책임자를 말한다.
 - ⑤ “운전보안장치”라 함은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제동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운전 경계장치, 열차방호장치, 운전용 통신장치 등을 말한다.
 - ⑥ “유효장”이라 함은 열차를 정차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접촉한계표지 상호간의 길이를 말하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 대하여는 출발신호기까지의 길이(자동화된 구간에서는 전기막이 이음목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 ⑦ “퇴행운전”이라 함은 열차가 운행도중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⑧ “추진운전”이라 함은 동력차를 맨 앞으로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⑨ “폐색구간”이라 함은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한다.
- ⑩ “고장”이라 함은 열차가 정상적인 운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차량기기 및 장치의 오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의 비정상 상태를 말한다.
- ⑪ “수리”라 함은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차량상태를 운행 가능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 ⑫ “철도안전사고”라 함은 열차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⑬ “철도사고”라 함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 사상 사고를 말한다.
- ⑭ “일반안전사고”라 함은 철도자체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열차운행 중단과 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차사고, 설비사고 등을 말한다.
- ⑮ “운행 장애”라 함은 열차 또는 차량 운전에 일시적인 지장을 준 것으로서 철도사고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⑯ “철도시설의 재해”라 함은 기상조건, 지진,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⑰ “인적피해”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철도직원, 여객 또는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 ⑱ “사망자”라 함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자 또는 사고로 부상 당한 후 72시간 이내 사망한자를 말한다.
- ⑲ “부상자”라 함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3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을 증상, 3주일 미만을 경상이라 하고, 신체의 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부상도 증상으로 한다. 다만 사고당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정상” 판정을 받고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⑳ “물적 피해”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본 부속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건물이나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동식물이 사상, 부상 또는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 ㉑ “수습”이라 함은 철도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쌍방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열차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운 전

제4조(열차운행) ① 운행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승무원과 동력차 및 차장차는 홀수년도에는 남측이, 짝수년도에는 북측이 담당한다. 다만, 남북당국 간 합의를 통해 운행년도가 아닌 측의 열차, 승무원으로 운행구간을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행열차승무원은 경계(군사분계선)를 기준하여 반드시 해당 측의 규정과 지시 및 운전설비조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열차정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호교환하고, 만약 수정·보완으로 열차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즉시 상대방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열차운행횟수, 운전시각 등 년 간 열차운행계획은 남북철도운영 공동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열차운행은 낮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한한다.

제5조(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남과 북이 정한 분계역간의 운행 구간으로 한다.

② 분계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남측	북측	비고
경의선	도라산역	판문역	

③ 운행구간을 연장하여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6조(일일열차-운행계획) ① 쌍방의 분계역장은 일일열차 운행계획을 매일 08시 이전까지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서면 통보하며 오전 8시부터 유선전화로 재확인 한다. 다만, 분계역장회의에서 사전합의 결정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일열차운행계획 통보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서면 또는 유선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일열차운행계획 통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열차번호, 기관차번호, 편성량 수, 차종, 품명, 운행시간
2. 승무원 명단
3. 승무원원 및 화물수송량
4. 열차출발예정시각
5. 차량복귀 요구일
6. 기타 열차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열차의 취급) ① 쌍방의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 상호간 운행열차 폐색취급 합의 없이는 운행구간에 열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운행열차는 상호 합의하여 정해진 운전시각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는 열차출발 또는 도착 시에는 즉시 상대측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에게 출발 또는 도착시각, 편성량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운행구간의 운행열차는 역 이외 구간에서 정차할 수 없다. 다만,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으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무원 소속 분계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분계역장은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 받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차 후 출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운행구간의 운행열차는 퇴행·추진운전 할 수 없다. 다만, 선로 또는 열차의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쌍방

간의 분계역장이 합의하여 승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 ⑥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는 열차 출발시 마지막 차량이 출발선 최종 전철기를 벗어날 때까지 감시하여야 하며 도착 시에는 도착 3분전에 나가 열차를 감시하고 편성 량 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분계역장 지시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25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고, 차장은 휴대용 무선 전화기로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연동폐색 취급) ① 운행구간에 운행열차를 진입시키려 할 때에는 분계역장이 협조하여 폐색수속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취급은 운행열차를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는 할 수 없다.
- ③ 폐색취급 후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 하였을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연동폐색수속(절차)에 대하여는 분계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열차 조성) ① 열차조성은 열차출발시각 30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열차운행 지장여부 확인은 각 측에 파견된 열차인수·인도 요원이 합동으로 시행 한다.
- ③ 열차의 길이는 쌍방의 분계역 유효장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분계역장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열차에는 객차와 화차를 혼합연결 할 수 없으며, 파손차량은 각 측의

열차운행사무소장의 검사를 받은 후 운전도중 분리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선전화기의 사용) ① 열차 또는 차량에서 무선 전화기의 사용은 쌍방이 정한 운행구간에서 남과 북이 상호간에 정한 공용주파수를 이용한 무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을 할 때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운전정보를 교환할 때(역-기관차-보수자(승무원) 상호간)
 2. 운전상 위급을 요하는 사항을 통고할 때
 3.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 취급 및 각종 전호를 할 때
- ③ 열차무선전화기의 호출방법은 [부록2]에 의한다.
- ④ 기관사(승무원)은 출고 시 기관차용 무전기와 휴대용(비상용) 무전기를, 역무원은 근무교대시 역용 무전기를, 작업자는 작업 출무 전 휴대용 무전기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열차 운행 중 기관차 무선전화기 고장 또는 장애 시에는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한다.
- ⑥ 열차운행에 참가한 모든 무선전화기는 언제나 동작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3장 화물운송

제11조(운송의 의무) ① 쌍방 철도는 다음과 같은 화물운송에 대하여

본 부속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운송한다. 다만 기본합의서 제9조 2항에 정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1. 쌍방 간 화물운송계획에 포함된 화물
 2.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화물
 3. 송화인이 본 부속서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
- ② 쌍방철도의 역명은 자기 측 제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역명을 사용한다.

제12조(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
 2. 전체 또는 부분 일시정지
 3. 탁송의 거절 또는 조건부 수탁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측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기 측 제규정에 의거 공포를 요할 때에는 공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송기한) ① 쌍방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송기간: 1일
 2. 수송기간: 매 200km마다 1일
- ② 천재지변이나 통관 등 쌍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운송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1건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화물은 1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송화인, 수화인, 발역, 착역, 탁송일시, 취급종별 및 운임요금 지급방법이 같을 것
2. 차급화물은 1차에 적재할 수 있는 수량

제15조(운송이 허가되지 않는 물품) ① 쌍방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운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본합의서 제9조 2항에 정한 화물
 2. 쌍방 어느 한 쪽에서 운송을 금지하는 화물
- ② 본 부속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허가되지 않는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억류시켜, 화물을 억류시킨 철도 측의 법령과 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특정조건 하에 운송이 허가되는 물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화물은 수송설비를 갖추고 수송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2. 자기차륜의 회전으로 운송되는 철도차량
3. 귀중품 및 위험품
4. 사체 및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동물

5. 부패하기 쉬운 화물

- ② 제1항에 규정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송화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7조(운송계약의 체결 및 결제수단) ① 출발역 역장은 이 부속서에 의하여 송화인과 상대측 구간을 포함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다.

- ② 분계역장은 출발역 역장에게 인계 받은 송장과 해당 화물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인계인수함으로써 송화인과 상대측 철도 간에 화물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③ 운임은 자기 측 화폐단위와 미 달러 또는 유로화로 병기하며, 당해 연도 초 공동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운임은 자기 측 구간은 자기 측 운임체계를 적용하고, 상대측 구간은 상대측 운임체계를 적용하여 상호 정산하되, 별도 운임체계 필요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8조(의무이행의 담보) ① 송화인과 수화인이 비용납부 등 제반 의무사항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할 경우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속한 측의 화주가 대리 이행할 책임을 진다.

- ② 쌍방은 운송계약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수수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는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송장) ① 쌍방의 철도화물에 사용되는 송장은 국제철도화물협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한다.

- ② 송장에 사용되는 용어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송화인이 알려야 할 사항) ① 송화인이 화물을 탁송할 때에는

화물 각각에 대하여 정확하게 송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출발역 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송화인은 송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발역
2. 도착역
3. 송화인과 수화인
4. 화물의 품명 및 포장의 종류, 성질
5. 화물의 품명마다 그 개수(산적(散積)인 것으로서 개수를 계산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한다), 실중량(kg), 부피(m³)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화물의 포장) ① 운송도중 성질·형상·중량변화가 예상되는 화물은 감량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② 용기나 포장 없이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쌍방은 책임지지 않으며, 그로 인한 철도측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송화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분계역에서 화물의 인도인수) ① 분계역에서 화물의 인도인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개차와 조차에 적재한 화물은 봉인에 근거하여 인도인수하며, 상·하부의 문고리 부분에 봉인한다.
2. 컨테이너화물은 세관봉인에 근거하여 인도인수 한다.

3. 산적화물을 분계역에서 계량한 결과 송장의 중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송장의 중량을 정정하여 날인하고, 인도인수서에 해당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계역에서 계량한 화물이 도착역에서 계량한 결과와 상이 할 경우에는 분계역에서 계량한 중량으로 한다.
 4. 인도인수시 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계량 또는 관계자 입회하여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계중기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중량을 계량하는 비용은 상호 면제한다.
 - ③ 송화인이 송장에 신고한 중량과 상이할 경우 쌍방 인도인수 책임자가 서명한 기록서(국제철도화물협정 제18조에 정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산 한다

제23조(운송계약의 변경) ① 쌍방 철도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출발역에서 화물을 되돌려 받는 경우
 2. 도착역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화인을 변경하는 경우
- ② 1항의 운송계약 변경 시 자기 측 분계역장을 경유하여 상대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운송계약 변경은 국제철도화물협정 별지 제17호(운송계약변경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4조(화물운송의 책임) ① 쌍방은 송장에 의거하여 화물이 도착역에서

송화인에게 인계되는 시점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쌍방은 화물과 송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운송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운임수수 및 정산) ① 운임은 남북 각각 자기 측 운임체계에 의하여 적용한 운임에 대하여 상호협의 후 최종운임은 발송역에서 송화인에게 수수한다.

- ② 쌍방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비용정산협정을 체결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4장 시설, 전기 유지보수

제 1 절 선 로

제26조(선로의 보전) ① 운행 구간 내 쌍방의 선로는 열차 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 ② 남북관리구역의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선로 순시는 매일 최초열차 운행 전에 도보 또는 자주식 장비로 시행하고 순회결과를 상대측의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 ③ 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재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로를 감시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가능여부를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운행 구간 내 선로의 작업시에는 작업예고 표지판을 세우고 열차는 주의운전을 하여야 한다.

- ⑤ 각종선로의 제표(거리표, 구배표, 곡선표 등)는 수시로 점검하여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⑥ 건널목에는 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필요시 직원을 배치하여 열차 및 차량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⑦ 건축한계(레일두부 상면에서 높이 6,450mm, 궤도 중심부에서 폭 2,100mm) 내에는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에 저촉되는 물건을 둘 수 없다. 다만, 작업상 필요한 경우로서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서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쌍방의 운행 구간 내 선로변경 및 개량 시에는 완료된 관계도서(선로 평면도, 선로 종단면도, 정거장 평면도, 선로일람 약도, 구조물도 등)를 상대측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 ⑨ 운행구간 중 남북관리구역 내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및 기계작업 시 작업자는 쌍방이 인정하는 공동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전에 작업내용, 작업예정시간, 작업인원, 작업위치 등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하고, 분계역장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및 승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및 선로순시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열차운전취급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6조(일일열차운행 계획)에 의거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제 2 절 전기통신 및 신호

제27조(전력계통 운영) ① 역사 및 역간 전력계통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고 별도의 사항은 분계역장간 합의하여 정한다.

1. 분계역간의 전력공급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경계(분계선)구간까지 고압배전 선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계역사내 전원공급은 자기측 전력계통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전력설비 유지보수) ① 분계역간 고·저압 전력설비는 쌍방이 정한 일정 주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날짜를 정하여 상호 통보하고 시행한다.

② 전력설비 점검시 사전에 점검내용, 방법 등을 통보한다.

③ 점검보수 시 한계지점간 쌍방의 관리구간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시행하여야할 구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통신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① 통신설비의 운영은 분계역장이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무선, 유선통신 설비에 대하여 쌍방은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신설비를 점검할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내용 및 방법 등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분계역장은 통신고장 등으로 열차 출발 및 도착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호 연락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⑤ 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승무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점검보수는 자기측 분계역에서 경계(분계선)구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시행하여야할 구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신호설비 유지보수-연동검사 포함) 신호설비의 유지보수 등은 다음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① 보수작업(연동검사 포함)의 시행

1. 쌍방은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협의한 날짜까지 상대측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유지보수 계획서를 통보 받은 자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합동보수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조정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계획서에 의한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시간, 내용 및 방법 등을 분계역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합동보수를 시행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운전협의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수작업이 완료되면 장치가 정상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분계역장에게 완료통보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계역장은 장치가 정상상태임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애 및 긴급보수작업의 시행

1. 장애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및 내용 등을 분계역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단독으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대측에게 합동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수작업 완료 후 작업시간, 사유, 조치사항 등을 상대측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치의 사용 또는 중지

1. 신호 보안장치를 사용중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고 또는 장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계역장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을 중지한다.

나. 신호기 및 건널목보안장치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 중지 표지 또는 고장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 선로 전환기류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분계역장에게 선로 전환기의 쇄정을 요구하여 쇄정하고 관계가 있는 진로도 사용 중지 한다.

라. 연동장치 취급버튼의 사용을 중지 할 때에는 그 취급 버튼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설비도 사용을 중지한다. 이 경우 취급버튼에 카바를 씌우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취급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2.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장치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역 구내에 있어서는 분계역장에게 취급지장 및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5장 차량 인도인수

제31조(차량 인도인수 기본원칙) ① 쌍방 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은 조립부품이 완비된 양측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열차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의한다. 단, 별도 협의가 있을 때는 지정된 차량을 사용 할 수 있다.

- ② 자기 측 구간에서 운행되는 상대측 차량으로 자기 측 화물운송은 할 수 없으며, 상대측으로 운송 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빈차로 반환 하여야 한다.
- ③ 상대측 차량의 체류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운용일수는 화차는 7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③항의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예정 1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차량의 현재위치, 복귀 예정일 등을 상대측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반환기일이 지난 차량은 반환기일까지의 지연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지연료는 운임과 연계하여 분기별 분계역장회의에서 정산한다.
- ⑤ 상대측의 요청이 있을 시 개별차량에 대한 현재의 위치 및 차량상태를 파악하여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차량의 유지보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측에서 책임진다. 운행열차의 운용경비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불량 차량의 위탁검수비 등 따로 정한 수리비용은 운임에 연계하여 정산토록 한다.
- ⑦ 남측 차량의 차호 인식은 현재 남측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량번호 앞에 ‘S’표기와 철도마크(표지)로서 구분한다.

제32조(인도인수 절차와 방법) ① 쌍방의 열차운행에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그 조립품이 완비되어 정상상태이어야 하며, 쌍방 간 차량인도 인수 기술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② 쌍방은 [별표 1]의 철도차량 인도인수서를 4부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2부씩 서로 교환한다.

1. 인도인수서에는 차량상태, 불량차 내역, 당일 누계 차량 인도인수량, 연간누계 인도인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쌍방은 인도인수 차량 수에 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쌍방은 차량 인도인수시 불량차를 인도할 수 없으며, 인수소속은 불량차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인수거부 불량차는 인도 측에서 수리 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량이 소속된 측에서 보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소속의 과실 또는 부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⑤ 인수차량의 불량개소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차량을 유지하고 “불량차량 유지조서”[별표 2]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고, 쌍방 열차운행사무소장이 고장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협의한다. 이 경우 차량은 인수가 안 된 것으로 보며, 인도소속의 책임으로 협의되면 수리 또는 위탁수리를 의뢰한다.
 - ⑥ 인수거부 불량차 중 인도소속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은 차량이 소속된 인수소속에 위탁수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리 의뢰서”[별표 3] 4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2부씩 갖는다. 위탁수리 시간은 48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9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물건을 실은 차량이 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경미한 불량인 경우 “불량 차량 등록부”[별표 4]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차량과 함께 인도하고, 인수할 때 기재 된 불량 개소는 수리 없이 인수한다.

- ⑧ 쌍방은 차량 인도 시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인수 거부된 차량에 대하여는 적재상태를 재정비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 ⑨ 차량의 인도는 상대방 측 분계역에서 하고, 인수는 자기 측 분계역에서 한다.
- ⑩ 쌍방은 차량의 인도인수를 위하여 각각 4명의 인도인수 요원 (검수요원)을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한다.
- ⑪ 인도인수는 쌍방의 차량검수 책임자간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받은 자가 서명할 수 있다.
- ⑫ 쌍방은 상대측에 상주하는 자기 측 인도인수요원의 명단을 매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승인하여야 한다.
- ⑬ 인도인수를 위해 상대측 분계역으로 이동하는 인도요원은 당일 최초 운행열차 및 최종 운행열차에 승차하여 상대측 분계역으로 이동 및 자기측 분계역으로 철수하여야 한다.

제33조(차량검수 및 기술지원) ① 자기 측 구간에서 운행 중인 상대측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보수품을 요구할 경우에 상대측은 보수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리완료 후 보수내역 및 차량상태를 상대측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부품은 당해 차량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자기 측 구간에서 운행 중인 상대측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측은 필요인원 파견 및 장비를 제공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 있고, 자기측은 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쌍방 간 차량운용 전에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요원의 실무교육은

쌍방이 지정하는 정비소속에서 시행하고, 인원 및 기간은 별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4조(검수시설 설치) ① 쌍방은 자기측 분계역에 차량 인도인수요원의 사무 공간 및 차량정비용 장비의 설치 등 필요 시설물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설치시설물은 자기 측 부담으로 하고, 인도인수 및 수리에 필요한 장비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는 상대측이 공급한다.

② 차량 정비용 장비는 [별표 5]과 같으며, 추가 장비 설치시는 쌍방 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사고처리·손해배상책임·편의보장 및 활동

제 1 절 사고처리

제35조(사고의 구분 및 종별) ① “사고”는 열차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철도안전사고, 열차 운행선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일반안전사고로 구분한다. 단, 사고보상 및 책임부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철도사고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열차사고

가. 열차충돌: 열차가 다른 열차 또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나. 열차탈선: 열차가 탈선한 사고

다. 열차화재: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운행이 중단된 사고

라. 열차전복: 차량이 수직면에서 지면으로 45도 이상 넘어지거나
자체와 대차가 서로 분리되어 그 중 어느 하나가 자갈표면
밖으로 나간 사고

마. 열차분리: 열차가 운행 중에 열차가 서로 분리되는 사고

바. 열차지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차가 운전시분보다 11분
이상 늦은 사고

2. 건널목 사고: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등과 충돌 또는 접촉한 사고

3. 사상사고: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제36조(사고보고 및 조사) ① 정거장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차적으로
분계역장이 대응하고, 정거장 외에서 발생 시에는 기관사 또는 사고현장
발견자가 분계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사항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1. 안전사고 경위 및 처리상황
2. 사망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망일자, 사망원인
3. 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상정도, 입원내용
4. 차량의 파손 등 피해정도
5. 물적 피해 상황 등

② 분계역장은 신속히 사고내용을 조사토록 하고 필요시 상대측과의
협의사항 등을 정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정밀 조사토록 할 수 있다.

③ 분계역장은 사고대책 수습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보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사상자 조치) ① 역구내 외에서 사상자 발생(상대측 직원)시에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사망자 발생 시는 사고현장 상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 밖으로 안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장은 사상자수, 부상정도, 사상자의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사고지역에 가까운 분계역장에게 보고하고, 쌍방은 도움 요청을 받은 즉시 사상자 구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고처리 후 책임판정을 위하여 “사상사고처리보고서”[별표6]를 작성하여 분계역장이 보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상자가 원할 경우 자기 측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⑤ 사망자에 대한 시체의 인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시체를 검시한 후 시체는 소지품과 함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신속히 인도한다.

2.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측과의 동의하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할 수 있다.

제38조(사고차량 처리) ① 상대측 차량이 자기 측 구간에서 열차의 탈선, 전복, 추돌 등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대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사고원인, 차량상태, 수리 가능 여부를 상대측 철도직원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파손 차량을 차량이 소속된 철도에 수선을 의뢰할 때는 “위탁수리 의뢰서”[별표 4]를 4부 작성하여 2부씩 보관하고, 수리비용은 쌍방이 협의한다.
- ③ 자기 측 구간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대측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한 후 차량이 소속된 철도에서 인정하면, 제작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잔존금액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차량이 소속된 측에서 사고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면 차량이 소속된 측의 분계역까지 운송하고 쌍방의 인도인수 철도직원이 공동 확인하며, 사용가능 부품이 있을 경우 재사용하는 조건으로 제작 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잔존금액은 남북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차량이 소속한 측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복구) ① 분계역장은 사고복구 대책반을 구성하여 책임자를 정하여 현장상황보고 등을 최초보고, 중간보고, 진행보고, 최종보고 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필요시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 ②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물품은 사고복구를 위하여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태세와 점검 등으로 비상시 대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상대측의 요구 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고복구 비상자재(품목 및 수량)를 쌍방이 합의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쌍방은 복구방법 및 복구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손해배상책임

제40조(배상금 지급의 보증) ① 쌍방의 정부당국은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지급보증을 한다.

② 쌍방이 인정한 보험회사 또는 제3국의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요구시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배상의 면제) 쌍방의 철도당국은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2조(배상금 지급방법) ① 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미 달러 또는 유로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배상금은 상대측 분계역장 입회하에 수령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제43조(인적피해 손해배상 산정) 인적피해 손해배상 산정은 쌍방이 인정한 보험회사의 배상기준에 따른다.

제44조(물적피해 배상범위)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상한다.

1. 물건이 멸실 또는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교환 가액
2. 훼손된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제45조(화물의 배상) ① 쌍방은 철도 측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화물의 멸실, 훼손, 부패 혹은 기타 원인에 의한 질량저하로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배상액 한도는 남북이 합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송장에 화물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장 기재가격을 근거로 하여 배상한다.

제46조(화물운송기한 불이행에 따른 배상액) 화물이 운송기한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 운송기한을 초과한 철도측은 운송비용과 초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수화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연료를 지불한다.

1.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1/10 미만인 경우: 운송비의 6%
2.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1/10 이상이거나 2/10 미만인 경우: 운송비의 12%
3.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2/10 이상이거나 3/10 미만인 경우: 운송비의 18%
4.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3/10 이상이거나 4/10 미만인 경우: 운송비의 24%
5.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4/10 이상인 경우: 운송비의 30%

제47조(화물피해 배상청구) ① 송화인과 수화인은 운송계약을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배상청구 시 송화인은 출발역에, 수화인은 도착역에 배상청구신청서와 배상청구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③ 제출받은 철도측은 배상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배상청구를 심의하여, 배상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였다면 배상청구인에게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 ④ 배상청구인이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남북철도운영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절 편의보장

제48조(편의보장의 대상) 쌍방이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대상은 상대측 대상자(이하 ‘통행자’ 라함)와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외국인이다.

1. 철도직원
2. 통행차량의 기관사 및 승무원
3.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외국인

제49조(편의보장) ① 쌍방은 통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보장을 하여야 한다.

1. 쌍방은 통행자의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쌍방은 통행자가 운행구간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법칙금을 부과하거나 상대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쌍방은 통행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 ② 법질서를 위반하고 자기 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상대측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하며, 법질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 ③ 쌍방은 통행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 ④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상대측과 해당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장 기타사항

제50조(환경보존 대책) ① 열차가 운행하게 될 남북관리구역은 50여 년 동안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고, 세계적으로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쌍방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철도운행으로 인한 생태계변화 등을 쌍방의 관계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2년 단위로 남북이 합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 ③ 본 지역에 선로 및 구조물의 신설 또는 개량과 노선변경 등을 시행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 ④ 보존가치가 있는 희귀생물, 멸종 동식물, 곤충, 자연습지, 해안사구 등에 대한 자료는 상호 연구결과 등을 교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대책을 세운다.

제51조(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부록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세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부속서의 개정) 본 부속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53조(부속서의 발효) 본 부속서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교환한 후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판문 역에서의 화물취급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에 의한다.
2. 제46조에 정한 화물운송기한 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은 판문역의 화물취급시설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형석

북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북측 단장

박정성

I

총리급 합의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8.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2007.11.21.]

남과 북은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과 개성~신의주 간 철도 개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제1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열차운행 확대에 따라 수정 보충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위원 명단을 11월 중에 교환하고, 제1차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운행에 따라 남북 분계역에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1차 회의에서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운행하고, 화물수송량 확대에 따라 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측은 판문역 임시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열차운행을 위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신호·통신·전력 체계 및 마무리공사를 위한 자재·장비 등을 본 합의서 <부록1>과

같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자재·장비 등은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첨부1>에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화물열차운행에 따른 행사를 12월 11일 판문역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와 방법을 문서교환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 접촉 시 제공하기로 했던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이번 합의에 따라<부록2>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개성공단과 남측 지역 간 화물수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측은 판문역 임시화물처리장과 개성공단 간 화물수송을 처리하며, 판문역 임시화물처리시설 공사를 화물열차운행 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한 신호·통신 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화물열차 개통 전까지 계속 협의 추진하면서, 신호·통신 설비의 정상운영을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통화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화물운송을 위해 구 봉동역 화물역사 및 부대 시설과 철도 건설에 협력하며 구체적인 문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협의 확정하도록 한다.

남과 북은 화물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및 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하며, 화물역사 등의 건설을 위한 기자재 품목 및 수량은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2002.9.19)>(첨부1)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남과 북은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운행을 계기로 남북열차운행을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간 철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 현지조사는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개략조사를 진행하며 2008년 초에 구체적인 정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② 현지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문서교환 등의 방법으로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21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형석

북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북측 단장

박정성

9.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2007.12.01.]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함)은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남북철도운영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경의선 문산 - 봉동 사이의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의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회의에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명단은 본 회의록 부록1에 첨부함)

1. 회의 의제

- 1)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당면한 화물열차 운행 횟수, 열차 편성수, 운행시간 문제
- 2)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당면한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작업 절차
- 3)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화물장표류 문제
- 4)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화물취급과 관련한 운임 및 요금 환율문제
- 5)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등 일정문제
- 6) 기타 사항

2. 주요 합의사항

1) 화물열차 운행 횟수, 열차편성수, 운행시간문제

- 쌍방은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서의 당면한 화물열차 운행은 하루 1회 왕복으로 하며, 편성량은 기관차 1대, 화차 10대, 차장차 1대(기관차 포함 총12량)를 기본으로 하되, 화물수송량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는 매일 오전 9시 도라산역을 출발하여 9시 30분에 판문역에 도착하여 화물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판문역에서 남측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14시로 한다.
 - * 비무장지대에서의 열차운행은 쌍방 군사당국의 합의에 따른다.

2)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직원 작업절차

-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서의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열차운행 사무소 직원들의 공동작업 절차는 본 회의록 부록2로 첨부한다.

3)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화물장표류 문제

-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서의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화물 장표류는 본 회의록 부록3으로 하며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한다.

4) 화물취급과 관련한 운임 문제

-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한 운임 및 요금은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 및 요금체계에 따르며, 적용화폐는 유로화 또는 미 달러로 하되, 환율, 운임적용방법, 결제 및 지불방법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5)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서면 또는 연락 대표들의 접촉을 통하여 결정한다.

6) 기타 사항

- ① 경의선 문산 - 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남측은 12월 10일까지 판문역 임시 화물 처리장을 건설하며 북측과 합의한 대로 마감공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자재 비품을 12월 7일까지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② 200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하는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을 12월 8일 이전까지 북측에서 서면, 또는 실무접촉을 통하여 남측에 통보한다.
- ③ 남과 북은 분계역간 신호·통신 설비의 정상운동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시험통화를 2007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 진행한다.
- ④ 남과 북은 발생한 사고현장을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한다.
- ⑤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운전취급규정, 화물취급규정, 선로보수 정비규정 등의 해당하는 내용을 최대한 교환한다.
- ⑥ 본 회의록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사업들과 관련된 문제,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실무 문제들은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소장들을 통하여 협의·처리한다.

2007년 12월 1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남측 대표

김호성

북남철도운영공동위원회

북측 대표

김철호

1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8.01.30.]

남과 북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8년 1월 30일

개 성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양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11.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2004.05.28]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 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 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 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 측 항구 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로의 입항 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 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 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 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 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 기준으로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 사고 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 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기 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 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 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 당국 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 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 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 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 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세현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권호용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 간 협의 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라. 운항 목적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 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 측 항구 출항예정 7일 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 허가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 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 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 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 내 해상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 측 해역 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무선전화(VHF), 해상고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 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가. 군사 활동
 - 나. 잠수항행

-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 사. 어로
 -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 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 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 간 운항중인 인천-남포 간, 부산-나진 간, 속초-고성 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후 지체 없이, 항계 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 시 항계 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 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 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 시 자기 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 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있어서 자기 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해양 사고 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가. 선박 명 및 호출부호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 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 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 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 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6조 남북 해사 당국 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 당국 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보충

1. 이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 측 항구 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 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 당국 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2004년 5월 28일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세현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권호용

12.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 보도문(1-4차) [2002-2004]

[남북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1차)]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해운분야에서 남북 간의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쌍방 민간 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난구조 등 남북 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제2차 실무접촉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제2차 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중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2년 11월 20일

금강산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정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정보를 비롯한 해상 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 당국 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 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 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 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세현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권호웅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문산(파주)에서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 간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와 그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 채택 의의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이번 접촉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항로대 및 통신보장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의 장소와 날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2일

문 산(파 주)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4년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개성에서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해운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부속합의서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빠른 시일 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 채택하기로 하였다.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26일

개 성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13.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7.12.28.]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남북 조선 및 해운 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등 해운협력사업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2008년 1/4분기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각기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부 산



V

군사적 조치에 관한 장관 및 실무급 합의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 [2000.11.17.]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 간 철도와 문산-개성 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 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11월 17일

마이클 엠. 던 소장
국제연합군측 대표

박림수 대좌
조선인민군측 대표

I

총리급 합의의

II

주요 안면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 [2002.09.12.]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저진-온정리 간 철도와 송현리-고성 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 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9월 12일

제스 엔. 솔리건 소장
국제연합군측 대표

리찬복 상장
조선인민군측 대표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2.09.17.]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철도·도로를 하루빨리 연결하는 것이 남북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관리구역 설정

- ①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비무장지대에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한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289호-제1291호 구간에서 낮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70m, 서쪽으로 30m, 계 100m,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39호-제0043호 구간에서 낮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50m, 서쪽으로 200m, 계 250m 폭으로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 ②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
- ③ 쌍방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안에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안에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한다.

- ④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지역에서 지뢰제거(해제)와 철도 및 도로 연결 작업 그리고 공사인원과 장비의 출입 및 통제 등 군사적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제거(해제)가 끝나면 그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⑥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도로주변에 각각 1개씩의 경비 (차단) 초소를 설치하며 그 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을 건설하지 않는다.
- ⑦ 남과 북을 오가는 인원들과 열차 및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남북관리구역 안의 군사적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은 별도로 날짜를 선정하여 협의 및 확정한다.

2. 지뢰제거(해제) 작업

- ① 쌍방은 철도와 도로건설 및 운행, 유지를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해제) 한다.
- ② 쌍방은 지뢰제거(해제)를 비무장지대 자기 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일부 구간에서 먼저 작업할 수 있다.
- ③ 쌍방은 작업인원수, 장비(기재)수량, 식별표식을 작업에 편리하게 정하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쌍방은 작업을 09시에 시작하여 17시까지 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들에게 폭음으로 자극을 주거나 파편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발은 1일전 16시까지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러한 폭발은 오후 작업시간에만 한다.
- ⑥ 쌍방 작업인원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그 거리가 400m로 좁혀지는 경우 안전보장을 위하여 그 구역 안에서의 작업은 날짜를 엇바꾸어 월·수·금은 북측이, 화·목·토는 남측이 하도록 한다.
- ⑦ 군사분계선까지 지뢰제거(해제)를 먼저 끝낸 측에서는 지뢰제거(해제)구역을 다른 일방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⑧ 쌍방은 지뢰제거(해제)와 관련한 장비 및 기술적 문제들을 협조한다.
- ⑨ 쌍방은 2002년 9월 19일부터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지역 안의 지뢰제거(해제) 작업을 동시에 착수한다.

3.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

- ① 작업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수와 식별표식은 지뢰제거(해제)시와 같이하며 작업 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한다.
- ② 쌍방은 작업과정에 폭발을 비롯하여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전화를 통하여 통보해 주며 필요한 협조를 한다.
- ③ 쌍방의 작업장 거리가 200m까지 접근하는 경우 그 구역 안에서의 작업을 남측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북측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안건 합의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 ④ 쌍방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감단계 공사를 위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20m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 ⑤ 쌍방은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따르는 측량 및 기술협의를 위해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지역들에 출입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한다.

4. 접촉 및 통신

- ① 지뢰제거(해제) 및 철도, 도로 연결 작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무책임자 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 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 상에 지어 놓은 임시건물에서 한다.
- ③ 그 전 단계에서 부득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에서 접촉한다.
- ④ 쌍방은 공사 현장들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 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자석식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을 연결한다. 서해지구에서는 합의서 발효 후 1주일 내에 판문점 회의장구역 서쪽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하고 동해지구에서는 지뢰가 완전히 제거(해제)된 다음 남북관리구역 동쪽 군사분계선 상에서 연결하며 그 전 단계에서의 통신연락은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 ⑤ 쌍방은 매일 07시부터 07시 30분 사이에 시험통화를 하며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기존통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통보해 주고 즉시 복구한다.

5. 작업장경비 및 안전보장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공사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100명을 넘지 않는 군사인원으로 자기 측 경비근무를 수행하며 그중 군사분계선방향 경계인원은 15명으로 한다.
- ② 경비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을 휴대 하며 그 외 모든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 한다.
- ③ 경비인원들의 식별표식은 작업인원과 구별되게 하며 경비인원 외에는 그 어떤 인원도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 ④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상대측 작업인원들을 향하여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쌍방이 날짜를 엇바꾸어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 측의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위치에서 경비 근무를 수행한다.
- ⑥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과 장비(기재)의 안전을 보장하며 예상치 않은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하여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 심리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쌍방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경비 및 작업인원들을 비무장지대 밖으로 철수시키며

전화통지문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⑧ 쌍방은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상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주며 자기측 지역에 대한 진화 및 피해방지 대책을 신속히 세우고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6. 합의서 효력발생과 폐기 및 수정, 보충

-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지나가는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들에서만 적용된다.
- ③ 본 합의서의 철도, 도로 연결 작업과 관련한 조항(1조 4항, 7항, 2조~5조)들은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 ④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2년 9월 17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이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4.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3.07.3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 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 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 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 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물품
 -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 다. 우편물
 - 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5.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2.23.]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조 6항에 따라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지역에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초소의 임무

- ① 남북관리구역 내 철도, 도로의 안전 상태를 관측하고 그를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보장한다.
- ②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차량고장,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 ③ 승인을 받은 차량과 탑승인원들만 통과시킨다.

2. 초소의 설치

- ① 쌍방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안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자기 측 도로 옆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한다.
- ② 초소의 규모와 형식은 2003년 11월 28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단장)접촉에서 합의한 설계에 따른다.
- ③ 쌍방은 경비(차단)초소를 서로의 공사방법과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 측이 빠른 시일 안으로 설치하고, 상대측에 통보한 다음 운영을 개시한다.

- ④ 초소에는 깃발 및 선전간판, 군사적 목적의 지하구조물과 화기진지 또는 총안구(화점) 등을 설비하지 않는다.
- ⑤ 초소 앞 도로상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세울 수 있는 2~4개의 이동식 교통 통제대(차단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초소의 운영

- ① 근무인원은 쌍방이 각각 3명으로 한다.
- ② 근무는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08시부터 17시)의 필요한 시간에 실시하며, 쌍방이 협의 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근무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 이하를 휴대하며, 그 외 다른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한다.
- ④ 쌍방 초소 근무 인원들은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거리를 유지한다. 100m내로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4.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

- ①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쌍방 현장군사실무책임자들 사이에 협의 해결한다.
- ② 필요한 경우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사이에 협의 해결할 수 있다.

5. 효력발생과 수정·보충

- ① 본 합의서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간 서명 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12월 23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대령 문성득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대좌 유영철

I

총리급 합의서

II

주요 안건 회고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위문

V

군사적 조치

6.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2004.06.04.]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상선 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
 -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 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 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 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 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
준장 박정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단장
소장 안익산

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7.11.16.]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선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는 쌍방 당국 사이의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주관한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 ② 위원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8.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7.12.29.]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지역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 내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문제

나.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다.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착공식을 진행하는 문제

라.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업지구와의 보완적인 관계를 실현하는 문제

마.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이를 완비하는 문제 등

- ②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2008년 1월 31일 경에 실시하기로 하고 북측은 자료제공과 시설 방문 등 제반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합의되는 날짜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조사단의 방문경로와 인원·조사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해주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 내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가.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 나. 해주항 개발을 해주경제특구 개발 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
- 다. 현존 부두 개보수와 항로확보, 단계별 부두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는 문제 등

제3조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 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① 서해공동어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확정하는 문제
- ② 수산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문제

- ③ 공동어로구역을 남북 공동의 이익과 평화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관리운영하는 문제
- ④ 서해에서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수산분야 기술교류를 비롯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문제 등

제4조 남과 북은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 상반기내에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① 한강하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문제
- ②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협의·확정하며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하는 문제
- ③ 한강하구 시범골재채취 등 공동이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설적인 공동이행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 ④ 한강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

제5조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안에 개최하며,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그 산하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제6조 수정 및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9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종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상
박송남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위원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위문
V	군사적 조치

9. 동·서해지구 남북열차 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2007.05.11.]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 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 전까지 상호 통보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 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 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소장 정승조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증장 김영철

I

총리급 합의의

II

주요 안건 회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10.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7.12.06.]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쌍방은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개방한다.
2. 쌍방은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 명단과 열차 현황, 적재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기관차 앞면 오른쪽 상단에 50×40cm 크기의 주황색 깃발을 부착한다.
4.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최저 시속 20km/h로, 최고 시속 6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의 출입 및 세관심사 등을 받는다.
쌍방은 세관심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지원 문제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열차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며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금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인원, 장비가 군사분계선 100m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 열차 운행 시 사고를 비롯하여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 신속히 통보하며, 상대측 구호(작업) 차량 및 인원의 긴급통행을 허용하는 등 정상회복에 협력하도록 한다.
8. 본 합의서는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 교환한 후 2007년 12월 11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으며 동·서해 지구 기본도로, 철도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 발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7년 12월 6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11.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7.12.13.]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자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 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 통행 질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 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 대로하기로 하였다.
-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실무 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 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 통신 선로와 군 통신 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수정보충 및 발효

-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동·서해지구 철도·도로통행, 통신·통관의 새로운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 ③ 본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④ 본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2월 13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I

총리급 합의인

II

주요 안건에
관한 합의인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12.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018.09.19.]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제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 1】
-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 2】
-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 3】
-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 4】
-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I	총리급 합담의
II	주요 안건 합의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강구하기로 하였다.【붙임 5】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붙임 1】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273호와 제 1278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123호와 제 1135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99호와 제 0808호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52호와 제 0660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79호와 제 068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17호와 제 0724호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23호와 제 0027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34호와 제 004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155호와 제 016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12호와 제 021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33호와 제 0240호사이의 쌍방초소

-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

-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 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 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 하에 진행한다.

③ 참 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 왕래를 허용한다.

【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489호~제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 북측 : ㄱ) 북위 3817′ 35″ 동경 12705′ 22″

 ㄴ) 북위 3818′ 23″ 동경 12706′ 52″

○ 남측 : ㄷ) 북위 3816′ 38″ 동경 12706′ 04″

 ㄹ) 북위 3817′ 26″ 동경 127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 ~ 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 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

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 mm× 세로 600 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군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 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 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 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 내 체류를 허가한다.
-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900mm × 세로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처리한다.
-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 합의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붙임 5】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 ⑤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 전에 상호 통보한다.
 - ② 공동이용수역 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한다.
 -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경찰 및 감시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I	총리급 합의
II	주요 안건 합의 구성
III	경제협력
IV	철도, 도로, 해운
V	군사적 조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값 13,500원



ISBN 978-89-8479-923-3
ISBN 978-89-8479-920-2 (전4권)